

제3장 운영관련 사항

제7조(이용정원 및 모집방법)

가. 당 기관은 이용정원을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하는 재가 장기요양기관이다.

나. 서비스 이용자 모집방법은 다음과 같다.

- (1)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(www.longtermcare.or.kr)를 통한 기관홍보
- (2) 상담 - 전화 상담 후 방문
- (3) 기존 수급자(보호자)의 지인소개
- (4) 지자체 및 유관 기관의 추천
- (5) 지역사회 병원 및 단체등과 연계하여 재가노인복지시설(방문요양, 방문목욕)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, 지역 관내 이용자를 확보한다.
- (6) 도로 현수막 홍보 및 기관 홍보 리플렛을 제작하여 홍보, 블로그, 유료광고를 이용 할 수 있다.

제8조(이용계약에 관한 사항)

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.

가. 계약기간 : 서비스 기간은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, 유효기간 만료시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.

나. 계약목적 -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(기관)와 서비스대상자(보호자)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.

다. 본인부담금 :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.

- (1)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.
- (2)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경감율에 따라 경감한다.

라. 월 이용료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.

단,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.

마. 그 밖의 이용부담액은 실제 비용으로 한다.

등 급	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	인지지원
월 한도액	2,512,900	2,331,200	1,528,200	1,409,700	1,208,900	676,320
본인부담금 내역	기초 수급자				0% 부담	
	차상위계층				6% 부담	
	보험료감경대상자				9% 부담	
	일반수급자				15% 부담	

방문요양

(단위:원)

30분이상	60분이상	90분이상	120분이상	150분이상	180분이상	210분이상	240분이상
17,450	25,320	34,120	43,430	50,640	57,020	63,530	70,080

방문목욕

(단위:원)

차량이용(차량 내)	차량이용(가정 내)	차량 미이용
88,990	80,230	50,100

바. 신원인수인의 권리, 의무,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

(1) 권리

- 가)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
- 나)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
- 다)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
- 라)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
- 마)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

(2) 의무

- 가) 이용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
- 나)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의무
- 다) 개인정보 변경시 즉시 통보 의무
- 라)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
- 마) 이용자의 고의,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집기, 비품 등의 파손 및 망실에 관한 원상회복, 배상의 의무
- 바)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이용 준수의무

(3) 계약의 해제 :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해지 시에는 건강보험공단 등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.

- 가)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
- 나)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
- 다) 심각한 배회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
- 라) 이용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

사. 이용료 등 수납 :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.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수납 한다.

아.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- 이용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.

제9조(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)

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인정 등급이 변경되었을 때,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때,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하는 때 및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해 이용료 등의 변경이 필요시에는 그 비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방법 및 절차는 계약서에 변경된 사항을 기록하고, 이용자(보호자)와 기관이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서명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하는 것으로 한다. (다만), 매년 고시에 의해 변경되는 수가변동과 관련한 사항은 전산 등을 통하여 이용료 변경 내용에 대한 상세 내역을 보호자(입소자)에게 안내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으로 변경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한다.

제10조(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)

가. 서비스의 내용

1) 방문요양	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
2) 방문목욕	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 또는 가정 내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

나. 서비스의 세부사항

(1) 신체활동 지원	세면도움, 구강관리, 머리감기기, 몸단장, 옷 갈아입히기, 목욕도움, 화장실 이용하기, 기저귀 교환, 식사 도움, 체위변경, 이동도움, 신체기능의 유지증진, 운동 및 일상생활 훈련 보조 등
(2)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	취사, 청소 및 주변정돈, 세탁, 장보기 등
(3) 개인활동 지원	외출동행, 병원안내 및 동행, 산책동행, 각종 정보안내, 기타 일상업무
(4) 정서지원	말벗, 격려 및 위로, 생활상담, 의사소통 도움 등
(5) 치매관리 지원	행동변화 대처, 프로그램 진행
(6) 다음 항목 외의 경우 제외	- 가사지원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에게 관련된 것만 인정된다. - 가족에 관련된 가사일과 요양보호사 업무가 아닌 업무행위는 하지 않는다.
(7) 방문목욕	가정방문 방문목욕(□차량 미이용 □차량이용)

다.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

월 이용료는 매년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며, 초과분 및 기타 비급여 비용 발생 시에는 전액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한다.